

행정기획위원회
소관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일자리정책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5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4월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시 필요한 각종 국가자격시험, 어학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- 나. 기존 조례상 상위법명과 달리 작성되어 있는 조항을 수정하여 일치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‘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’ 사업 근거 규정 명시(안 제8조 4항) 및 재정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 신설(안 제8조 5항)
- 나. 법명에 맞추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으로 수정(안 제15조 5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청년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 63,000천 원 반영

다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의견제출 없음(2023. 2. 16. ~ 2023. 3. 8. (20일간))
- 2)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3)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개선권고사항 반영
- 5)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구분	권고내용	반영여부	개선안
부 패 영 향 평 가	재정부패유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 신설 예시) 제8조 ⑤ 제2항~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, 요건, 절차, 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	반영	<p>【반영사항】</p> <p>제8조 5항 신설</p> <p>제8조(고용 확대 및 취·창업 지원)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·요건·절차·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(어학능력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)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·요건·절차·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제5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”로 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에 관한 소급적용)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응시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고용 확대 및 취·창업지원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고용 확대 및 취·창업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(어학능력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) 응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·요건·절차· 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u>
제15조(시설 설치 및 운영) ① ~ ④ (생 략)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청년 시설의 사용료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	제15조(시설 설치 및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「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 ----- ----- -----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8조의 4항 신설에 따른 지원금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2항 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안전생활국 일자리정책과장 박 정 훈